The Journal of Law & IP 제12권 제1호
Vol. 12 No. 1 July. 2022

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대한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정석*

〈목 차〉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Ⅲ. 공동소유에 관한 법리
Ⅳ. 해결방안

Ⅰ. 서론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조각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조각투자'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투자 방식"[1]으로 정의되며, 과거에는 지분투자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자산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플랫폼을 통해 지분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과

◆ 투고일자: 2022-06-10 심사완료일: 2022-06-23 게재확정일자: 2022-07-08
* 특허청 행정사무관.
1) "한경경제용어사전", 2022년 5월 3일 접속,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5041.

관련하여, 한우, 와인·시계, 미술품 등 투자 대상이 고액이거나 보관·관리 상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조각투자가 확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소투'의 경우 미술품 원소유자가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면 플랫폼은 미술품 소유권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 금액을 원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이후 미술품의 관리·처분은 플랫폼에 위탁되고, 미술품 매각이 성사되면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한다.

조각투자 활성화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다양한 투자자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도 조각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새로운 저작물의 추가적인 창작을 위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영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저작재산권 중개·유통산업, 위탁산업, 관리산업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에 대한 조각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

저작재산권 조각투자[2)]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 행사나 지분양도 등이 용이할 필요가 있으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와 관련하여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만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관해 일반적·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는 저작권법 제48조가 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대한 일반규정이므로 저작재산권 지분양도에는 저작재산권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견해도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저작재산권 조각투자

2)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조각투자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는 뮤직카우(MUSICOW)사례는 광고 등의 문구와 달리 저작재산권 거래 모델이 아니다. 이 모델은 뮤직카우가 저작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뮤직카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저작권료참여청구권)를 판매·거래하는 모델로 저작재산권을 거래하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채권적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2022년 4월)하였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에서 출발하여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의 공동소유,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1. 공동저작물

(1) 성립요건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창작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저작물을 의미한다."[3] 공동저작물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창작적 기여, 공동관계, 개별적 이용 불가능이라는 세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창작적 기여는 '2인 이상'이 '창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금만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라고 할 수 없고, 각자가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획안 제시, 조언, 최종 검토 등에 그치지 않고 사실행위로서 창작행위가 있어야[4] 하지만,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적이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5] 공동관계와 관련해서는 창작행위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객관적 공동), 아니면 공동창작의 의사까지

3) 저작권법 제2조제21호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242-243면.
5) 오승종,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358면.

있어야 하는 것인지(주관적 공동)에 관해 학설이 나뉜다. 판례는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내려는 의사"[6]라 보고 있다. '개별적 이용 불가능'은 저작물의 부분만으로는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작은 역할만을 할 수 있어서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작물을 분리하면 물리적으로 파손[7]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효용이 크게 손상된다는 의미이다.[8] 이 점에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 가능한 결합저작물과 차이가 있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단독저작물[9]과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의 성립을 신의에 반하여 방해할 수 없다. 또한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자를 정할 수 있고, 이 대표자의 대표권에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없다. 공동저작물은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므로, 공동저작물에 이바지한 각 공동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도 분리할 수 없을 것이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저작자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

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7) 예컨대 조각물을 공동창작하면서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최종 창작물에서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해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8) 박성호, 앞의 책, 249면.

9) 저작권법상 '단독저작물'은 없으므로 '저작물'이 정확할 것이나, 1인이 창작한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을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이하에서는 단독저작물로 지칭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지분양도, 질권 설정은 저작재산권자 전원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각 권리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저작물 이용의 이익은 특약이 없으면 공동저작자에게 배분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분비율로 배분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저작권법 제15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등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규정이 저작재산권에도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5조에서 저작재산권 일부를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48조제1항에서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지분양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지분거래를 통한 공동소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

(1)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유형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는 권리 취득의 방법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창작 당시부터 공동저작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이하에서는 '원시적 공동소유'로 지칭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저작자 또는 단독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지분양도나 상속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이하에서는 '후발적 공동소유'로 지칭한다.)이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48조의 의미를 검토하고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저작권법 제48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1) 전원의 합의 또는 동의

먼저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10] 이므로 지분양도나 질권설정은 양자택일의 문제이므로 찬반을 구하도록 하고, 행사의 경우는 행사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를 합치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을 공동저작물의 분리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가분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느 한 저작자의 권리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누가 지분 양수인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승계할 것인지가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11]가 되기 때문에 '전원'의 합의·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은 합의·동의의 주체를 '저작재산권자'로 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달리 일신전속성이 없고,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공동저작자라 하여도 일단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48조제1항이 "공동저작자 아닌 자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을 이미 상정"[12]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의 타당성이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48조제2항은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

---

10)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021, 778면.
11)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239면.
12) 오승종, 앞의 책, 365-366면.

동저작자'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배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한다고 정하므로, 문리적으로 볼 때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라 '창작에 이바지한 자'인 공동저작자가 배분의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행사, 지분양도 등에 대한 결정은 '저작재산권자'가 하도록 하면서,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48조가 '공동저작물'에 관한 조문이라는 점과, 제1항의 '행사'와 제2항의 '이용' 각각의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하면 제48조제2항은 공동저작자가 자기이용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간의 이익 배분원칙으로서, 예를 들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이전된 이후, 이제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게 된 공동저작자들 중 1인이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 그 공동저작물을 자기이용하는 경우의 이익은 공동저작자 전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행사와 이용의 의미와 함께 이 점을 자세히 살펴본다.

3) 행사와 이용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의 '행사'는 저작물의 이용과 그 허락을 의미하며,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출판권 설정은 물론 자기이용까지 포함된다는 견해[13][14]가 통설[15]이라고 하며, "저작물을 단순히 낭독하거나 감상하는 차원의 이용이 아니라 복제 및 배포 등을 통한 저작

13)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
14) 박성호, 앞의 책, 250면.
15)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415면.

물 이용은 저작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16]이다.

제2항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을 사실상 제1항의 '행사'와 같게 보는 시각이 있다. 이 견해는 "제1항 '행사'에 자기이용과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이 포함된다고 보는 이상, '이용'은 제1항의 행사를 수익창출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하므로, 제1항의 행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전부를 제2항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17][18] 한다고 한다. 유사한 취지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문 속에 있기 때문"에 제2항 '이용'에는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9]

그러나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자'와 '공동저작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20] 제1항에서는 '행사'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이용'으로 명백히 다르게 정하는 이상[21]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다. 오히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과 '공동저작자 간의 특약'을 결부시키고 있는 제2항을 문면 그대로 해석하여 '이용'은 '공동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즉 자기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동

---

16)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법학」 제40권 2호, 19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26면.

17) 조영선,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 「법조」 2010·3 (Vol.642), 2010, 150면.

18) 조영선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공동저작자(이 견해는 제1항의 '저작재산권자'를 '공동저작자'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에 의한 권리행사에 예외가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행사에 동의하지 못한 자가 행사를 묵인하는 대신 그 이용 대가를 수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19) 정상조, 앞의 논문, 227면.

20) 저작권법 전체에 '공동저작자'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제48조제2항 단 하나뿐(공동저작물의 저작자라는 표현은 제15조제2항에 사용된다.)이다.

21) 만약 제2항을 제1항 '행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 입법자가 당연히 '행사'라고 표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기여는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자기이용'한 이익만큼은 자기이용한 그 공동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이 없는 공동저작자까지 포함한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이유에서 '공동저작물'에 대한 특칙인 저작권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제48조제2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나 이용허락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배분에 관한 일반적 규정[22]이거나, 제1항의 전원 합의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익을 배분하는 보충적 규정[23]이 아니라, 공동저작물의 특징으로 인해 자기 이용의 이익이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공동저작자에게도 귀속하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제3자에게 양도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원래의 공동저작자 중 1인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자기이용하지 않은 다른 공동저작자에게도 분배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규정이며, 제48조가 공동저작물에 대한 특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의 '행사'에 자기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통설의 견해도 자연스러운 결론이 된다. 만약 자기이용에 '행사'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동저작자의 자기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자기이용의 이익도 공동저작자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저작자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때도 '자기이용' 범위만큼의 저작재산권은 양도하지 않고 유보시켜놓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22) 정상조, 앞의 논문, 227면.

23) 조영선, 앞의 논문, 150면.

4) 신의에 반하는 합의성립 방해 또는 동의거부 금지

저작권법 제48조제1항 후단은 신의에 반한 합의 성립 방해나 동의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신의에 반하는 행위는 "공동저작물의 작성 목적, 저작재산권 행사 또는 지분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상대방 등에 비추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여 그러한 행사 또는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상황"[24]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규정은 '전원'의 합의·동의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저작재산권 행사, 지분양도 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를 정리하면 제48조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지분양도 등에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동의·합의를 요구하는 규정이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된 경우에 대한 이익배분 원칙이 아니라 공동저작자가 자기이용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간의 이익 배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제48조가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48조제1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저작권법상 문제점을 도출한다.

(3)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의 적용범위

1) 학설

원시적 공동소유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48조가 적용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후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과 민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①제48조제

24) 이해완, 앞의 책, 411-412면.

1항이 '공동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재산권자'로 정하고 있고, 공동저작에 의한 공동소유와 지분양도 등으로 인한 공동소유를 차별할 근거가 없으므로 후발적 공동소유에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제48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25] ②제48조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조문이므로, 저작권법이 규정이 없는 '단독저작물'의 후발적 공동소유에는 민법을 준용해야한다는 견해,[26] ③제48조제1항의 '저작재산권자'는 '공동저작자'로 한정하여 해석[27]해야 하며, 후발적 공동소유 일반에는 민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28] ④공동저작물의 후발적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저작물의 성질에 변화가 없고, 지분을 양도한 제3자도 공동저작자와 동일한 인적 결합관계에 있게 되므로 공동저작물의 후발적 공동소유에는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이, 단독저작물의 후발적 공동소유에는 민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29] ⑤후발적 공동소유자 간의 관계와 공동저작자 간의 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반드시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저작자가 1인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제48조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30] 등이 있다.

2) 판례 : 제48조제1항은 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일반조항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나, 서울고등법원 판례[31]가 관련 내용을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소외 '제니스'와 '필름지'는 제니스가 영화를 제작하고 필름지가 투

25) 오승종, 앞의 책, 365-366면.
26) 박성호, 앞의 책, 2017, 250-251면.
27)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동저작권자의 반대의 정당성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 지분처분의 자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8) 조영선, 앞의 논문, 122-123면.
29) 정상조, 앞의 논문, 235면.
30) 이해완, 앞의 책, 411-412면.
31)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자하는 방식으로 '두사부일체'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제작 완료 이후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필름지가 가지기로 하였다.(2001년 7월) 필름지는 원고 갑에게 투자받으면서 제니스 동의 없이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 일부를 양도하였다.(2001년 8월) '두사부일체'를 제작·상영(2001년 11월)한 이후, 피고는 필름지의 동의하에 제니스로부터 '두사부일체'의 저작재산권 등을 양수하여 '투사부일체'를 제작·상영(2005년 6월)하였다. 원고는 필름지의 원고에 대한 지분양도(2001년 8월)가 유효하며, 여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사부일체'의 2차적저작물인 '투사부일체' 제작이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례는 필름지와 제니스가 공동저작자인 영화 제작에 협력한 자들로부터 '두사부일체'에 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 공동으로 보유[32]한다고 보았다. 이때 후발적 공동소유 시 지분권자 일부의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저작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1) 권리의 종류별로 나누거나 이용허락하는 것은 몰라도 영상저작물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2) 공동저작에 의한 원시적 공동소유와 양도·상속 등에 의한 후발적 공동소유를 차별할 근거가 없는 점, (3) 저작권법 제48조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얻도록 하여 공동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특허·상표법은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32) 판례는 '공동 보유'로 표현하고 있다. 저작권법 등에 소유와 보유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이 보유를 '소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정하면서 차명소유, 주식 인도청구권 등을 예시하므로, 보유는 직접 소유와 사실상·간접적 소유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 사건 영화제작계약 당시에는 영화가 미 제작 상태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저작재산권은 '보유'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다만, 이 판례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소유로 한정하여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공동소유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때, 일반적으로 제45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상당"[33]하다고 보면서, 영화제작계약이 일종의 조합계약의 성격을 갖고, 필름지와 제니스가 공동저작자에 준하는 정도의 긴밀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필름지의 원고에 대한 지분양도에는 제니스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양도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3) 민법상 준공동소유(민법 제278조)와 저작권법의 관계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보면, 핵심 쟁점은 후발적 공동소유에 저작권법 제48조가 적용되는지, 또는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로 보인다. 이 점에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278조[34]에 관해 살펴본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에 대한 권리[35]이며,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36]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은 무체물이고 민법상 물건에도 '전기'와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나, 저작물은 "창조적 가치 있는 정신적 사고의 무형적 산물"[37]이므로 전기 등의 자연력과 다르다. 결국 저작재산권은 유체물도 아니고 자연력도 아니므로 물건이 아니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

---

33) 서울고등법원, 앞의 판결.

34)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35) 송덕수, 「신민법입문」, 제11판, 2020, 209면.

36)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37) 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4호, 2012, 117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38][39][40]할 것이다. 한편, 민법상 준공동소유가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사례,[41]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하는 사례,[42] '준공유'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에 민법상 공유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43] 등이 있다.

3. 통일적 규율 필요성

생각건대,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는 법문을 존중하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제48조제1항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면서 '공동저작자' 여부는 묻지 아니하므로, 제48조제1항은 '공동저작물'만의 원시적·후발적 공동소유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독저작물의 후발적 공동소유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278조에 따라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하여, 공동저작물과 단독저작물을 차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동소유 전반에 제48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44]나, "민법상 조합이나 준합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우회적인 방법"[45]이라는 견해는 오히려 입법론적으로 타당한 견해일 수

38) 김준호, 「민법강의」 제20판, 법문사, 2014, 732면.
39) 조영선, 앞의 논문, 127면.
40)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658면.
4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42)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4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44) 이숙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저작권의 공동보유", 「Law & Technology」 제5권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134면.

는 있겠지만, 저작권법 제48조의 적용범위가 '공동저작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고, 민법 제278조의 규정도 명백한 이상, 현행법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46][47]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의 판례가 필름지와 제니스의 영화제작 계약을 조합계약에 준한다고 보면서도 민법 제278조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48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펴본 학설 중 ②설(박성호의 견해)의 타당성이 높다.

결국, 저작권법 제48조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고, 저작권법은 공동소유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공동저작물의 원시적 공동소유에는 제48조가 적용되도록 하고, 단독저작물에 대해서는 입법상 공백[48]을 두어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창작 방법이 공동창작인지 또는 단독창작인지에 따라 저작재산권 행사 조건을 차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가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규율방법을 검토하여 일관적이고 바람직한 기준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검토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를 민법, 산업재산권법에서의 공동소유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

45) 이숙연, 앞의 논문, 135면.

46) 박성호, 앞의 책, 250-251면.

47) 박성호의 연구는 단독저작물의 후발적 공동소유와 관련하여 "유추적용을 통한 해석이라는 것은 실정법상 적용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추적용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다수설은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이 상이함에도 일본 저작권법의 해석을 모방·답습한 것이고 입법론과 해석론을 혼동한 것"이라고 한다.

48) 제48조가 '공동저작물'에 대한 조문이라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는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에 관하여 제48조에서 규정하려다가 단독저작물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빠뜨려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형태의 저작물인 공동저작물에 관해 단독저작물과 달리 특별히 규정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Ⅲ. 공동소유에 관한 법리

1. 민법상 공동소유

민법은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권리를 인정한다.[49] 소유자가 1인인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처분 등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50] 민법은 공동소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자간의 인적 결합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서 출발"[51]하여 공유·합유·총유 3가지 유형의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1) 공유

공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때 그 법률행위로 성립[52]하거나, 부부의 귀속불명재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830조제2항이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권을 공유로 하는 민법 제1006조의 경우처럼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공유물의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 공유자가 가지는 추상적인 소유의 비율이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지분은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된다."[53]고 한다. 민법은 각 공유자가 자

---

49)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50) 예를 들어 2인이 절반씩 지분을 공동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이 갑자기 주택을 처분해버리게 되면, 다른 1인은 설령 그 처분금액의 절반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거주할 공간이 없게 된다.

51) 김준호, 앞의 책, 704-705면.

52)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신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4] 판례도 "각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55]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유자 일부가 자기 지분만큼의 공유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56]이라고 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57]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1인이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정하는 것도 적법[58]하다고 하며, 보존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59]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유물 자체를 처분·변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전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라도, 전부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매도자의 지분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고 한다.[60] 한편, 공유자는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청구의 자유는 "지분처분의 자

---

53) 김준호, 앞의 책, 709-710면.

54)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5)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760 판결.

5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57)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58)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59)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6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유와 더불어 공유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며, 합유 및 총유와 규별되는 표지"[61]라고 한다. "공유의 경우에는 합유·총유와 달리 공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분처분의 자유가 인정"[62]되며, 그 방법으로는 현물분할, 현금분할, 가격배상 등의 방법이 있다.

(2) 합유

합유는 조합체인 경우에 성립[63]하며, 조합은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상호 출자한 자들의 인적 결합체[64]이다. 합유는 "조합 자체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의 단독소유로 되지 못하고, 단체로서의 독립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여 사단으로 평가되지도 않는 점"[65]에서 총유와 다르다. 합유는 민법 제704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해 성립하기도 하고, 신탁법 제50조제1항과 같이 법률[66]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다.

민법 제271조 후단에 따라 합유자 각각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치며, 민법 제273조에 따라 합유물 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자는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합유지분은 조합원의 자격에 수반하는 것"[67]으로 조합원 자격과 별도로 그 지분만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전원 동의에 의해 합유지분을 양도하

---

61) 김준호, 앞의 책, 719면.

62) 송덕수, 앞의 책, 223면.

63)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64)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5) 김준호, 앞의 책, 724면.

66) 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9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29조 등에서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긴 하지만, 법률로 합유관계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신탁법 제50조제1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67) 김준호, 앞의 책, 726면.

는 경우, 양수자는 종전의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망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68]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민법 제271조제1항 후단이 합유자의 권리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정하므로, 합유자는 지분에 따라 합유물을 전체로써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방법은 민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합유자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69] 한편 합유물의 지분처분은 민법 제273조에 따라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유의 경우 동의 없는 공유물 처분도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지만, 합유는 그러하지 않다. 민법 제274조에 따라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면 종료되고, 이때 합유물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총유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예를 들어 교단이나 종중인 경우)의 사원들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70]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에 속하는 개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사단 구성원인 사단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71]이므로 이러한 관계를 총유로 부른다고 한다.

민법 제275조제2항에 따라 사단의 정관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는 민법 제276조와 277조에 의한다. 민법 제276조제1항이 총

6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6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7, 623면.

70)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71) 김준호, 앞의 책, 728면.

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72] 사원 각자에게 관리·처분권이 없고,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민법 제276조제2항이 각 사원이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원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관에 따라야 한다.[73] 한편,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때에 같이 취득되거나 상실된다.[74]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인이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75]한다고 한다.

(4) 민법상 공동소유와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을 원시적 공동소유하는 경우 인적 결합형태는 민법상 공유관계의 인적 결합보다는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동저작자들의 기여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점에서 공동창작을 통해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저작자들의 인적 결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인격권 행사에 언제나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점, 저작권법 제48조제2항이 자기이용의 경우에 그 이익을 저작재산권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점 등에서도 이러한 인적 결합을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작자들의 인적 결합관계는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유보다는 강하

---

72)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73) 민법 제276조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74)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75)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적 공동소유의 경우는 공동저작자처럼 창작과정에서 형성된 인적 결합관계가 없고, 단순히 지분을 취득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후발적 공동소유자 간 또는 후발적 공동소유자와 공동저작자의 인적 결합관계는 공동저작자 간의 인적 결합관계보다도 느슨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공동소유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703조제1항 공동사업의 약정을 하여 조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76] 합유나 총유의 인적 결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고, 민법상 공유에 해당할 것[77]으로 보인다.

2. 산업재산권법상 공동소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78]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79]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성립 요건으로서 등록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며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80] 비해, 산업재산권은 등록받아야만 성립[81]한다. 존속기간[82]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생존

76)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창작자 다수인이 각각 금전과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저작물을 창작하기로 하고, 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활용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조합을 이루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7) 산업재산권법을 검토하면서 살펴볼 판례(2002후567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특허권·상표권에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78)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실용신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79) 특허청, 「2022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등록과, 2021, 5면.

80) 저작권법 제10조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동안과 저작자 사후 70년인데 비해, 특허·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가능)인 등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규율 내용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특허법 등은 '공유'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것이 민법 제262조제2항의 '공유'인지, 아니면 하나의 객체를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인지 불명확하다.[83] 하지만 이렇게 정의규정이 없는 점이나, 뒤에서 살펴볼 판례(97다41295, 2013다41578)가 특허권의 공동소유를 과거에는 합유로 보다가 최근에는 공유로 보고 있으므로 특허법의 '공유'가 한눈에 보아도 민법의 '공유'와 같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허법의 '공유'를 '2인 이상이 함께 소유'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로 하고[84] 이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특허권, 디자인권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특허권은 이전 가능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지분양도나 질권설정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 합유와 유사하게 규정하는 부

---

81) 특허법 제87조, 상표법 제82조, 디자인보호법 제90조.

82) 저작권법 제39조, 특허법 제88조, 상표법 제83조, 디자인보호법 제91조.

83) 하재희, "특허권 공유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4면.

84) 민법상 공유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법 제262조의 '공유'와 특허법 제99조의 '공유'가 그 철자는 같지만 의미상 동일한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이하에서 그 관계를 파악해본다는 취지이다.

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지분양도가 가능하므로 특허권의 후발적 공동소유도 가능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6조도 특허법과 거의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다. 다른 부분만 확인해보면, 제96조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점(제1항 단서),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이전 가능하다는 점(제5항), 기본디자인의 소멸 시 그 기본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해야한다는 점(제6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허법에는 없는 개념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같이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디자인과 그 관련디자인의 권리의 중복부분에 대해서 2 이상의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는 것"[85]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 점은 제6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5항은 원래 분리 가능한 디자인을 하나로 출원한 것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제5항의 경우는 분리하여 이용 가능한 특성이 저작권법상 결합저작물과 유사할 수 있고, 제1항과 제6항의 경우는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한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와 유사할 수는 있겠으나,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 또는 공동소유 등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상표권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등의 이전과 공유에 대해 규정한다. 상표권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각각 분할·이전할 수 있고,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원 동의가 없이는

85) 노태정,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해서", 「특허와상표」, 대한변리사회, 제827호, 2014.2.5., 11면.

지분 양도나 질권 설정이 불가하며, 그 상표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후발적 공유도 가능하며,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원시적 공유와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도 앞서 살펴본 특허법 등과 동일하다. 다만, 자기 사용(특허의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해석[86]이 있다.

특허법·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은 각각 조건을 갖추는 경우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고,(제93조제4항부터 제7항) 이들에 대한 질권설정은 불가능하다.(제8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업무, 단체 등과 그 표장이 불가분한 경우 표장을 업무 등과 별도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등과는 큰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민법상 공동소유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법은 권리의 공동소유와 관련하여 후발적 공동소유와 원시적 공동소유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공유자의 인적 결합관계가 조합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지분양도, 질권설정, 전용·통상실시권(상표권은 제외) 허락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앞서 살펴본 민법상 합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관련하여, 과거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87]는 판례가 있었으나, "특허권 공유자가 일반적으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

86) 정상조 외, 「상표법 주해 Ⅱ」, 박영사, 2018, 132면.
87)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88]는 입장이 현재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특허권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디자인권의 공유에도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한편, 위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에 대해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89]하므로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특허권의 성질상 현금분할은 가능해도 현물분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상표권의 경우에도 유사한 취지의 판례가 있다. 즉, 상표법이 규율하는 내용이 합유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 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90]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를 보존행위로 보아 공유자 1인에 의한 소 제기를 인정하였다. 이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민법 제265조 후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는 경우, 산업재산권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

88)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8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90)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4)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 비교

지분양도의 경우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은 모두 지분권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 자기실시의 경우,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전원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상표권과 저작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저작권법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사'에 자기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전원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전용·통상실시권 허락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법이 모두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시권 허락을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과 실질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행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이 모두 이에 대해 전원 동의를 요한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양자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분할청구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모두 명문의 조항이 없다. 상표법에서 지정상품별로 분할 가능하다거나(제94조제1항), 디자인보호법에서 복수디자인권은 분할 가능(제96조제5항)하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성질상 분할 가능한 권리를 분할하는 것이지 공동소유관계의 종료로서 분할을 청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법은 공동발명자[91]를 인정하면서도 특허권의 공유에 관해서는 공동발명자 여부나 공동소유가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동소유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자의 권리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저작권법과는 다르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 사실상 설정등록 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며, 출원 과정에서 권리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인 이유에서, 창작으로 즉시 권리를 갖게 되는 저작권법과는 최초 창작자에 대한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91)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나 상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있으나, 대표적으로 특허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3. 소결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산업재산권이나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된 경우, 그 인적 결합형태는 일반적으로 조합체를 구성하거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총유·합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공유에 해당한다. 한편, 각 지식재산권법은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규정'을 두는 이유에 대해 특허권의 경우 판례 등[92]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그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93]한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법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 저작재산권을 승계하는지가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지분권자의 교체는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인적결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 등의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은 있을 것이나, 저작재산권 행사 등에 언제나 전원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 자유로운 행사는 물론 자유로운 지분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산권으로서 저작재산권의 활용이 위축되고 저작재산권을 매개로 한 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저작재산권에 대

92) 임세혁,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간단한 검토", 「Auto Journal」 2019-01, 2019, 24면.
9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해 이러한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즉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와 관련한 주요국 입법례를 살펴본다.

Ⅳ. 해결방안

1. 해외 입법사례 검토

(1) 민법상 공유와 유사하게 규율하는 사례(미국)

미국 저작권법[94] §101은 공동저작물(joint work)의 성립을 위해 둘 이상의 창작자와 창작자들의 기여가 분리불가능(inseparable) 또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부분으로서 합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 §201(a)에서는 저작권의 귀속(Ownership of copyright)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최초로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coowners)가 된다. §201(d)(1)은 저작권이 이전(transfer)되는 경우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은 양도, 법률, 상속 등에 의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이 공동소유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판례법상 'Tenancy in commons'라고 하는 부동산 공유자의 권리와 유사하게 규율"[95]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

94) CIRCULAR 92,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Laws Contained in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May 2021.

95) 조영선, 앞의 논문, 113면.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지분권자 사망 시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공유자의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작물 자유 이용을 통해 저작물 상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자 간 특약으로 제한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96] 한편, 미국 판례는 공유저작물을 자기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을 통해 얻은 이익은 공유자 전원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97][98] 이익 배분을 의무로 하는 것은 공유자들이 과다하게 경쟁적으로 상업화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99][100]이라 한다. 결국 미국 저작권법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의 공동소유를 민법상 공유와 유사한 형태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민법상 합유와 유사하게 규율하는 사례(일본)

일본저작권법[101] 제2조제12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저작권법 제2조제21호와 거의 유사하다. 한편, 일본 저작권법은 제65조에서 공동저작물을 포함한 '공유저작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96) 정상조, 앞의 논문, 210면.

97) Oddo v. Ries, Jun 19, 1984, 743 F.2d 630(9th Cir.1984); Shapiro, Bernstein Co. v. Jerry Vogel Music Co., 221 F.2d 569 (2d Cir.).

98) Oddo v. Ries, id. at 2, "A co-owner of a copyright must account to other co-owners for any profits he earns from licensing or use of the copyright".

99) Craig Y. Allison, Does A Copyright Co-owner's Duty To Account Arise Under Federal Law, 90 Mich. L. Rev. 1998(1992), p2000.

100) Craig Y. Allison, id. at 2000, "Commentators also pointed out that the rule may lead to a race between joint owners to exploit a work and thus a waste of the value of the copyright.".

101) 著作権法(明治三十二年法律第三十九号), 施行日 : 令和四年四月一日.

의 공동소유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 규율 내용은 민법상 합유와 유사하다. 일본저작권법의 이러한 특칙에 대해 학설은 "공유자의 공동 목적에서 유래하는 단체적 제약이 아니라 저작물이라는 객체의 성질에서 유래하는 제한이며 저작권의 공유는 합유가 아니라 민법의 공유"[102]라고 보면서, 전원합의 등을 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연대성이나 일체적 이용을 확보할 문화적 필요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이용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공유자로서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이용자가 나타나는 것은 용인될 수 없"[103]기 때문이라 한다.

한편, 일본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48조제2항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용의 이익은 저작권법 제48조가 '공동저작물'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유 저작권 일반을 규율하는 일본저작권법 제65조가 '공동저작물'이용이익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아도 저작권법 제48조가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일반조항이 아님은 명백해 보이며, 제48조를 앞의 판례(2007나67809)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저작권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독일)

독일 저작권법 제8조는 공동저작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수가(mehrere) 각자의 지분(Anteile)을 분리(sondern)하여 활용(verwerten)할 수 없"[104]는 경우 공동저작자가 되며, 저작물

102) 中山信弘저, 윤선희 역, 『저작권법』, 법문사, 2008, 166면.
103) 中山信弘저, 위의 책, 170면.
104) 하상익, "독일 저작권법 전문 번역 및 개관",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외연수

공표권이나 활용권은 공동저작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공동저작자 간 특약이 없으면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창작에 대한 협력 정도에 따라 공동저작자에게 배분된다고 한다.[105] 독일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은 "저작권은 이전될 수 없으나(nicht übertragbar), 다만 사인처분(死因處分, Verfügung von Todeswegen)의 이행으로서 이전되거나 상속재산분할(Erbauseinandersetzung)로 인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예외"[106]라고 정한다.

독일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을 양도할 수 없고, 이용권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복제권 등 재산적·배타적 권리[107]를 두고는 있지만, "타인에게 독립적·개별적으로 양도 가능한 복제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108]라고 한다. 즉, 지분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공동저작자들의 인적 결합관계가 조합원의 합유적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의 속성, 즉 저작인격권과의 융합 및 저작권의 양도 불가능성"[109]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독일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용권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저작을 통한 원시적 공동소유만이 존재하고 후발적 공동소유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논의하는 저작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보고서」, 17면.

105) 하상익, 위의 보고서, 17면.

106) 하상익, 위의 보고서, 25면.

107) 독일 저작권법 제15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유형·무형적으로 활용할 배타적 권리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방송권 등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고 한다.

108) 하상익, 앞의 보고서, 5-6면.

109) Haimo Schack,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Mohr Siebeck, 1997), Rn 285., 정상조, 앞의 연구, 213면 재인용.

(4) 공동저작자 권리행사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프랑스)

프랑스 저작권법(지적재산권법)[110] Article 113-2는 공동저작물(oeuvre de collaboration)을 "복수의 자연인이 창작에 기여한 저작물"로 정의한다. Article 113-3은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co-auteur)의 공동소유(propriété commune)라는 것, 공동저작자는 그들의 권리를 전원 합의(commun accord)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 합의 불성립 시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는 것, 그리고 각 공동저작자가 기여한 장르가 다르면(genres différents),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경우, 각 공동저작자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공동저작물 전체의 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여 부분이 분리 가능해도 공동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결합저작물을 포함"[111]한다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이용 또는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일정비율의 지분을 인정"[112][113]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48조나 일본 저작권법 제65조가 '공동(공유)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반면, 프랑스 저작권법 Article L113-3은 '공동저작자'의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공동저작자의 전원 합의를 요하는 이유에 대해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이 저작자에게 공표권과 공표허락 철회권을 부여[114][115]하고 있으므로, 만약 일부 공동저작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다른

110)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05 mai 2022.

111) J.A.L. Sterling, World Copyright Law, 2nd ed., Sweet&Maxwell, 2003, p188, 박성호,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권리행사의 방법", 「법학논총」, 35(2), 163면, 재인용.

112)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05 mai 2022, Article L131-4.

113)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55면.

114)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05 mai 2022, Article L121-4.

115) 다만, 철회권은 자유롭게 무한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를 사전에 보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의 철회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116]이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공표권과 그 철회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만으로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남으며, 오히려 프랑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자' 자체를 불가분한 것으로 보아 전원 합의를 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자기이용의 이익을 저작재산권 없는 공동저작자에게까지 배분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제48조제2항과 유사한 취지로 볼 수도 있고, '공동저작자'의 특별한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경우에까지 전원 합의 등을 요할 필연성은 적어지며,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가 보다 유연하게 규율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2. 민법을 준용하되, 인격적 이익도 고려하는 방안 마련

(1)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은 민법을 준용하여 규율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가 일관적이지 않은 점이나, 특허법·상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판례(2002후567, 2013다41578)를 볼 때,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을 반드시 민법상 합유처럼 규율할 필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되는 경우의 인적결합관계가 일반적으로 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저작권법에 대한 견해처럼 합유적 제한이 '저작물'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물건의 경우에도 공유 건물에 다른 공유자가 원치 않는 정치적 견해를 담은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하여 그 건물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악화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이용행위로 인한

116) 정상조, 앞의 연구, 215면.

이용상황 변화'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이용자의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러 입법례를 보면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은 입법의 미비가 아니라 민법 규정을 준용하려는 취지일 가능성도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양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프랑스는 '공동저작자' 전원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관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고, 특허법·상표법도 '공유 특허권' 등으로 규율[117]하고 있으며, 민법 제278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만 제48조에서 규정하고 공동소유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적·경제적 이용 측면에서 보면, 저작재산권이 활발하게 이용될수록 저작물의 가치가 향상되고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저작재산권 행사, 지분양도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저작권법과 같이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 행사, 지분양도 모두에 전원 동의를 규정하는 경우, 자유로운 행사는 물론 지분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산권으로서 활용이 위축[118]되고 저작재산권을 매개로 한 투자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저작물 위주의 창작 환경에서는 저작권이 저작자의 인격 일부

---

117) 1987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당시 특허법에는 특허권의 공유에 관해 현재와 같은 내용의 조문이 있었고(구 특허법 제54조), 상표법의 경우는 "공유인 상표는 공유자 전원의 승락이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구 상표법 제27조제5항)고 하여 최소한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1990년 당시 의장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118)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이 '신의에 반한 합의 방해' 등을 금지하는 것은 전원합의 시 저작재산권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므로, 저작권법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인격권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공동 창작이 생소하지 않은 현대 창작환경에서 조각투자의 경우까지 고려하는 경우, 저작권이 저작물 창작 유인 및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인센티브 이론의 시각에 비중을 두어 저작재산권의 재산권적 특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물건도 불가분한 경우[119]가 있어 저작재산권의 불가분성과 다르지 않고, 저작재산권 행사가 경제적 가치를 소진시키는 경우가 드물며 "공동창작의 밀접한 협력관계는 공동저작물이 완성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주체로서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향유할 수 있으면 족한 것"[120]이라는 견해의 타당성이 있다.

물론 저작재산권을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율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판례 등에 따라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보존행위'로 보아 공유자 중 1인의 소 제기를 허용하거나, 저작재산권 분할 청구를 인정하면서 그 방법을 현금 분할이나 가격배상으로만 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이나 갱신(상표권의 경우)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민법상 물건에 대한 권리와 달리 저작재산권에만 특유한 문제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저작재산권의 인격적 이익 고려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활용을 제고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이

119) 민법 제269조가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경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민법도 불가분한 물건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대의 4륜 승용차는 분리 이용 가능한 형태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120) 정상조, 앞의 연구, 231-232면.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그 자체의 향상발전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발명은 순수한 경제재(economic goods)인데 비해, 저작물에는 상대적으로 저작자의 개인적인 조건이나 특성이 강하게 반영"[121]되어 있는 점,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써, 이러한 기능은 "저작물을 보호하여야 할 적극적 근거"[122]라는 점에서 민법상 물건이나 특허법상 특허발명과 달리 인격적 이익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인격적 이익이 저작인격권의 형태로 국한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의 저작재산권자 일부가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행사[123]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저작물의 '저작자의 사상·감정의 전달 기능'을 손상시켜 인격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일본저작권법이 특칙을 두는 이유와 유사하지만, 저작재산권의 가치하락이나 원치 않는 이용자의 발생이 아니라 저작자 자신의 사상·감정 전달기능 손상으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격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민법상 물건 등에 대한 권리와 저작재산권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공동저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저작자 사이에 자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행사와 관련된 특별한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와도 실질적으로 긴밀한 관련성"[124]이 있다는 견해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고, "공동저작물에 대

121) 박성호, 앞의 책, 516-517면.

122) 박성호, 앞의 책, 26면.

123) 예를 들어, 공동저작물인 그림을 이용하여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이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 공동저작자의 의사는 창작 당시에 기여도 산정 등에 있어 고려되면 충분"[125]하다는 견해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인격적 이익은 '저작자의 사상·감정의 전달 기능'에서 발생하므로,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자가 갖는 이익이며, 후발적 공동소유자가 갖는 이익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본다.

(3) 원시적 공동소유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마련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은 민법상 공동소유에 준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편,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공동저작물의 원시적 공동소유의 경우만 특칙을 두어 보호하고, 그 외의 경우는 민법상 공동소유를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저작물의 원시적 공동소유의 경우는 저작재산권 행사 등을 통한 인격적 이익이 공동저작자 전원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동저작자가 조합체를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앞서 본 저작권법 해석에 따라 민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행사, 지분양도 등에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합의를 요하는 등의 특칙을 두어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완전히[126] 후발적으로 공동소유된 경우에는 이러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격적 이익은 저작물의 '사상·감정의 전달기능'으로 인한 것이고

---

124) 이해완, 앞의 책, 411면.

125) 박정훈, 「공동저작물 규정의 입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59면.

126) 여기에서는 저작재산권자 중 공동저작자가 전혀 없는 경우로 사용하였다.

공동저작자는 '분리하여 이용 불가능한 기여'를 하여 공동저작물을 통해 사상·감정을 저작물에 담고 전달하는데, 후발적 공동소유자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는 있어도 사실행위인 기여를 양수할 수는 없으므로,[127] 후발적 공동소유자에게 인격적 이익이 발생할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공동저작물과 단독저작물이 후발적 공동소유 되는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한데, ①10인이 공동 창작한 공동저작물 지분을 제3자 10인이 각각 양수한 상황과, ②단독저작물의 지분을 제3자 10인이 1/10씩 양수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①과 ②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공동저작물의 지분을 양수하여도 창작에 대한 기여는 양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중 공동저작자와 후발적 공동소유자가 혼재하는 경우는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는 민법상 공동소유를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 특칙을 두게 되면 원시적 공동소유가 후발적 공동소유로 전환되기 위한 지분양도에 최소 1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게 되므로, 전환을 원치 않는 지분권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한 특칙을 명확히 두면 후발적 공동소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128]

---

127) 이는 특허발명에 대한 진정한 발명자(모인발명은 제외)를 변경하거나 발명자의 지위를 제3자가 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비슷할 것이다.

128) 공동저작자와 후발적 공동소유자가 혼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 중 공동저작자가 1명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원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제48조제1항을 해석"하자는 견해(이해완, 앞의 책, 412면)는 공동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조각투자 등에서 저작재산권자가 수백~수천 명이 되는 경우 그 1명의 인격적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론과 같이 규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첨언하여, 단독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 필요성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나, 공동저작물이 원시적으로 공동소유되는 것과 달리 단독저작자에게는 최초의 지분양도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단독저작자 자율에 맡기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저작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정 마련이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규율하게 되면, 앞서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검토하면서 도출한 저작권법이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과 관련한 학설들과 별도로 입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앞서 살펴본 공동저작물 완성 후의 공동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주체로서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향유할 수 있으면 족한 것"[129]이라는 입법론적 견해를 긍정하면서도, "특허법을 비롯한 다른 지식재산권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입법론은 전체 법질서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측면"[130]을 고려하여 지분양도, 자기이용, 질권설정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 각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재산권자 전원 합의로 해야 한다는 연구[131]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지식재산권법 간의 일관성이라는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고, 일관성 측면에서도 산업재산권법은 지분양도 등에까지 전원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도 저작재산권은 행사에 대해서만 전원 동의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은 저작재산권 행사의 인격적 이익 보호 측면에서, 같은 조 제2항은 자기이용의 이익배분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

129) 정상조, 앞의 논문, 231-232면.
130) 박정훈, 앞의 연구, 67면 186번 각주.
131) 박정훈, 앞의 연구, 66-67면.

저작물의 불가분성은, 결합저작물을 비롯한 다른 저작물의 범주와 구별짓는 특징점으로 볼수는 있어도 민법상 공유규정 등과의 관계에서 공동저작물에 특유한 별도의 규정을 둘 논거로는 다소 부족"[132]하다고 하면서 공동저작물에 대한 제48조 규정을 사실상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동소유 일반을 규율하는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공동저작자'의 의미나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단정적인 측면이 있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

결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법상 공동소유를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칙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에 대한 규정인 저작권법 제48조를 개정하여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만 규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반면, 후발적 공동소유의 경우는 보호해야 할 인격적 이익이 없고, 설령 약간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한 특칙을 통해 최초 1회의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동소유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중 공동저작자와 후발적 공동소유자가 혼재하는 경우, 이러한 혼재를 위해서는 최소 1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원치 않는 원시적 공동소유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원칙적으로 민법상 공동소유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저작재산권자가 수백~수천 명이 되는 경우에는 소수 반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132) 박정훈, 앞의 연구, 54면.

후발적 공동소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초 1회의 만장일치가 있은 후에는 전원의 합의·동의를 다시금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와 같이 원시적 공동소유만 제48조제1항으로 규율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게 되며, 당연히 민법 제278조를 따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후발적 공동소유에 대한 규정은 불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48조제1항 해석에 관한 다양한 학설, 하급심 판례(2007나67809) 등을 고려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주의적·확인적 규정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명확할 것이다. 특히 하급심 판례 등의 견해는 공동저작물이 후발적으로 공동소유된 경우를 단독저작물이 공동소유된 경우와 대비하여 보고 있으므로, 단독저작물이 공동소유된 경우에도 전원의 합의·동의 등을 당연히 요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확인하여 두는 것이 해석상 보다 간명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48조(_____)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그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경우, 그 공동저작물의 _____.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8조의2(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이 공동소유 된 경우의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민법」 중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Ⅴ. 결론

저작재산권 창작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된 저작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각투자 확산 등으로 인해 저작재산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등 이용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저작권법은 1987년 전부개정 이후 원형을 유지하여 오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관련해서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조문만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작권법의 해석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 제48조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고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을 규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48조를, 단독저작물의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공동저작물과 단독저작물의 공동소유를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바람직한 규율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상 공동소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에 관한 각국 저작권법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를 민법상 합유처럼 규율할 필연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민법을 준용하는 것이 저작재산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편, 물건이나 특허발명과 달리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감정의 전달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작재산권을 통해 발생하는 인격적 이익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공동소유 일반에 민법상 공동소유를 준용하게 되면 이러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저작물의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만큼은 권리 행사, 지분양도 등에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개정안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를 둘러싼 저작권법상 문제를 해소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저작재산권의 행사, 지분거래 등을 용이하게 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저작재산권 이용을 더욱 활발하게 함으로써 '문화 및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준호, 「민법강의」, 제20판, 법문사, 2014.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박정훈, 「공동저작물 규정의 입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021.
송덕수, 「신민법입문」, 제11판, 박영사, 2020.
오승종, 「저작권법」, 제5판, 박영사, 2020.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7.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정상조 외, 「상표법 주해 II」, 박영사, 2018.
특허청, 「2022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등록과, 2021.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2) 학위논문,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노태정,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해서”, 「특허와상표」, 대한변리사회, 제827호, 2014, 10-11면.
박성호,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권리행사의 방법”, 「법학논총」, 35(2), 157-188면.
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4호, 2012, 109-160면.
이숙연,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저작권의 공동보유”, 「Law & Technology」 제5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127-136면.

임세혁,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간단한 검토”, 「Auto Journal」 2019-01, 2019, 23-25면.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법학 제40권 2호, 19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7-241면.
조영선,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 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 「법조」 2010·3(Vol.642), 2010, 108-157면.
하상익, “독일 저작권법 전문 번역 및 개관”,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외연수보고서.
하재희, “특허권 공유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 판례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760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

(4) 인터넷 자료

금융위원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2022.4.20.

뮤직카우, “올바른 주주되기 저작권 투자 PRE 백서 2021-10-21”, 뮤직카우 홈페이지, 2022.4.28. 최종방문

2. 국외문헌

中山信弘저, 윤선희 역, 「저작권법」, 법문사, 2008.

Oddo v. Ries, Jun 19, 1984, 743 F.2d 630(9th Cir.1984); Shapiro, Bernstein Co. v. Jerry Vogel Music Co., 221 F.2d 569 (2d Cir.).

Craig Y. Allison, Does A Copyright Co-owner's Duty To Account Arise Under Federal Law, 90 Mich. L. Rev. 1998 (1992).

Haimo Schack,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Mohr Siebeck, 1997), Rn 285.,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법학」 제40권 2호, 19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13면 재인용.

J.A.L. Sterling, World Copyright Law, 2nd ed., Sweet&Maxwell, 2003, 188면, 박성호,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권리행사의 방법”, 「법학논총」, 35(2), 163면, 재인용.

〈 국문 초록 〉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은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의 행사나 조각투자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고등법원 판례도 있으나, 아직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을 규율하는 기준은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한편, 저작재산권 행사를 통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특칙을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을 원시적 공동소유에 한정하고, 저작재산권 공동소유 일반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확인적 규정을 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된 경우의 예측가능성 향상은 물론 저작재산권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저작권법 제48조, 후발적 공동소유

〈Abstract〉

Solution for the Problem in the Copyright Act on Jointly Owned Copyright

Jeongseok Seo*

The Copyright Act only regulates the exercise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 (Hereinafter, it is indicated as copyright.)' to Joint Works(Article 48), and there is no general provision for the case when the author's economic right owned jointly. This legal vacuum causes an unpredictability that could be an obstacle to the exercise of rights or transactions of the fractional share.

There are many research had conducted to fill this legal vacuum. Also, there is a high court precedent. But, there is still no general standard for the case when the copyrigh is jointly-owned.

This study found that it is generally appropriate to regulate the joint ownership of the copyright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special rules for Joint work to protect personal interests via the exercise of the copyright.

Based on these review, this study suggests an amendment

* Deputy Directo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the Copyright Act. It proposes to amend the Article 48 (1) of the Copyright Act to primitive joint ownership. Also, to add an confirmatory provision that applys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case when the copyright is jointly-own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improves predictability when the copyright is jointly-owned, but also promotes the use of the copyright.

Key Words: Jointly Owned Copyright, Copyright Act Article 48